

시간제 보육 현황과 발전 방안*

이영환¹⁾

요약

만 0~5세 영유아의 국가책임보육을 내세우고 무상보육을 실시한지 3년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2세 미만 영아를 위한 가정양육 지원 대책을 내놓는 등 보육정책의 전면 개편이 논의되면서 시간제 보육 활성화가 적극 거론되고 있다. 자녀양육에서 부모의 선택권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시간제 보육 활성화는 적극 추진되어야 하는 보육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육 정책의 다양화가 곧 형평성을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간제 보육은 이용자의 보육비용을 바우처로 지급할 뿐 아니라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없는 양육수당 수급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복지의 형평성과 출발선 평등에 부합하는 보육정책이 되기 위하여 시간제 보육 비용 지원에 있어서 취업여부에 따른 차등지원보다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을 적용함으로써 저소득층 양육수당 수급자 자녀의 시간제 보육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높은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때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어야 하는 근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시간제 보육, 양육수당, 형평성

I. 서론

최근 어린이집에서의 잇단 아동학대 사건²⁾이 논란이 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해 처벌과 감시 위주의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 이 논문은 2014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전북대학교 인간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2) 2015년 1월 13일 보도된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의 아동 폭행 사건(연합뉴스, 2014. 1. 13.)을 비롯하여 인천 부평구의 어린이집(연합뉴스, 2014. 1. 13.), 울산의 어린이집(KBS, 2014. 1. 21.)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보도되었다.

마련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모, 전문가, 원장, 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안’을 발표하였다. 어린이집 학대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처벌 강화와 CCTV 설치 의무화 및 부모참여 활성화와 같은 단기과제, 보육교직원의 자격관리 강화와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및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 확충과 같은 중기과제와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추진 등 7개 핵심과제이다(보건복지부, 2015a). 본 연구에서는 이들 핵심과제 중에서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지원으로서 시간제 보육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동안 보육관련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김정희·이경아·서화숙·최현진, 2004; 서문희·이옥·백화중·박지혜·최진원, 2005)를 보고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시설보육 지원의 공급자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서문희·최정운·최혜선, 2007)고 지적되어 왔다. 장영인·최영신(2008)은 필요한 시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은 보육서비스의 남용을 방지하고 부모양육을 지지하여 아동권리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여성취업 및 사회활동 증가와 고용형태의 다양화, 가정양육기능의 약화와 같은 요인으로 세계적인 추세에도 걸맞는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무상보육 정책은 부모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없이 시설에 아이를 보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서문희, 2012)라는 점에서 부모의 선택권 확대가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영아의 경우는 가정양육 지원 강화를 통하여 부모의 선택권을 높이는 한편 시설보육과의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며(황옥경, 2014), 전업주부들의 어린이집 이용을 줄이기 위해 양육수당을 늘리고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조선비즈, 2015)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양육수당 수급자가 이용대상이 되는 시간제 보육 지원은 가정 양육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인 2014년 7월부터 시간제 보육 사업을 시범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 사업은 2014년 보건복지부 정책목표인 ‘국민행복·희망실현’을 실천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걱정 없는 아동 양육,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 중의 하나인 걱정 없이 아이 낳고 키우기를 위한 보육사업으로서 엄마의 자녀 돌봄 지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다. 시간제 보육 도입 취지는 양육수당을 받는 시간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녀양육 부담

을 경감하고 부모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선택권을 제고하는데 있다. 특히 현행의 종일제 어린이집으로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부모들의 선택권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육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2014년부터 실시된 시간제보육과 기존에 실시되었던 일시보육을 비교할 때, 시간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일시보육이 전업주부의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시간제 보육은 맞벌이 부모를 위한 단시간 보육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일시보육은 부모의 근로여부 등에 관계없이 동일 시간 및 동일 비용을 지원했으나, 시간제 보육은 맞벌이와 같은 근로여부 등에 따라, 정부의 양육지원이 보다 많이 필요한 부모에게 시간과 단가를 추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4a, 2014b).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2014. 12. 15)를 통해 “2014년 7월 28일부터 실시된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12월 현재 80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총 16,435건 56,420시간의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이용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용시간, 비용, 교사와의 상호 작용, 프로그램,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³⁾ 평균 만족(만족, 매우 만족) 비율은 66.9%이며,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75.6%로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육수당 수급자로서 시간제 보육 비용을 지원받으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이용자는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 시간제보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거나 현재의 시간제 보육 모형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 바람직한 모델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양육수당 수급자의 시간제 보육에 대한 요구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보육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보육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아동발달적 관점, 즉 시간제 보육의 대상인 6개월~36개월 영유아들은 다른 사람과의 애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간제 보육을 받는 영유아가 보육교사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시간제 보육 비용 지원방식에서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정부가 전업주부의 가정양육을 유도하기 위한 보육체계 개편(국민일보, 2015)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의

3)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조사를 실시했으며, 시간제보육 이용 부모 665명, 기관장 52명, 보육교사 65명 등을 대상으로 조사, 심층 면접 등 실시(14.9월~12월)하였음. 현재 2015년 1월 육아정책연구소는 2014년도 시간제보육사업의 운영 현황 및 관리 체계 등을 검토하기 위해 성과분석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시간제보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운영 현황과 내용을 아동발달적 관점과 시간제 보육 비용 지원방식의 형평성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시간제 보육이 부모의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정착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하여 시간제 보육 시범 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분석하며,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 시간제 보육 전담교사, 시간제 보육 실시 기관장을 직접 또는 전화 면접을 통해 시간제 보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질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자료를 기초로 시간제 보육이 부모의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바람직한 보육정책이 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구체적 연구문제는 시간제 보육 사업의 내용은 어떠한가, 시간제 보육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시간제 보육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를 포함한다.

II. 연구방법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2014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따라 같은 해 7월부터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에 관한 내용과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최근(2015년 4월)까지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하여 시간제 보육 서비스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의 관점에서 현황과 만족도 및 개선 요구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과 육아지원센터의 기관장 3명과 시간제 보육교사 3명, 그리고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학부모 3명 등 모두 9명을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대면 면접을 진행하였다. 또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5개소를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기관장과 전화면접을 진행하였다. 기관 선정에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각각 포함하였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안배를 고려하였다.

연구자는 기관장들과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과 이용자들의 특성과 이용실태에 관한 개략적 내용을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또한 시간제 보육교사들과는 보육활동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면접을 전개하였으며, 시간제 이용 부모들과는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동기와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전화면접에서는 시간제 보육 이용자들의 특성을 중심으로 질문하였

다. 면접 및 전화면접은 2015년 3월~4월에 진행되었다. 면접시간은 평균 1시간~2시간정도 소요되었으며 전화면접은 20분~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면접 내용은 녹음한 후 내용에 따라 범주화작업을 거치면서 정리하였으며, 전화 면접은 별도의 녹음과정 없이 전화 면접을 진행하면서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 기록한 후 분석하였다.

Ⅲ. 시간제 보육 사업의 내용 및 운영 현황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 2에 명시된 일시보육 서비스 지원⁴⁾에 근거를 두고 시작된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사업으로 2014년도 예산 3,800백만원(국비 기준), 2015년 예산 7,507백만원(국비기준) 규모의 사업규모이다. 시간제 보육 지원대상은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가구의 6개월~36개월 까지의 영유아이며, 맞벌이 유무 등에 따라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구분된다. 기본형은 월 40시간까지, 맞벌이형은 월 80시간까지 시간당 보육료 4천원 중 각각 50%(기본형)와 75%(맞벌이형)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본형의 이용 대상자는 양육수당 수급자 중 전업주부로서, 병원이나 외출 등 전업주부의 긴급하고 일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월 40시간까지 월 4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 당 2000원을 부담하면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에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가 이용 대상자인 맞벌이형은 취업 등으로 인한 정기적·단시간 보육 수요에 대응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월 8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 당 1000원만 부담하고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간제 보육은 기본형과 맞벌이형에 따라 국가의 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업'이지만 기본형과 맞벌이형 모두 40시간과 80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보육비용 4000원 전액을 자부담하면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시간제 보육 비용의 국가 지원은 비록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나누어 차등지원되지만 양육수당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중의 수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시간제 보육 이용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은 맞벌이의 경우는 월 24만원(80시간 × 3,000원)까

4) 제26조의2(일시보육 서비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보육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 전업주부는 월 8만원(40시간 × 2,000원)까지며, 보육서비스 질 확보를 위하여 교사 인건비 100%와 운영비 32만원, 담임교사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제 보육 이용자에 대한 정부지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시간제 보육실시 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시간제 보육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간제 보육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3년 이상 보육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담교사를 별도로 채용하여 연령에 맞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대상은 6개월~36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이용시간은 월~금 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바우처를 지급받아야 한다. 양육수당 수급자에게 기본형 바우처를 우선 지급하고, 맞벌이 바우처를 신청하여 자격을 충족한 경우 맞벌이형 바우처를 지급 받는다. 이용일 1일 전까지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사전에 예약해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당일 해당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화예약 신청하여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 이용 시에는 기저귀, 여벌옷, 간식 등 개인준비물을 준비해 이용하고 결제는 '아이사랑카드'로 이용 때마다 결제를 하게 된다.

2014년 7월 28일부터 실시된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71개로 시작하였으며, 2014년 말까지 최대 120개 까지 확대하고, 2015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23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었다⁵⁾ 그러나 2014년 12월 현재 당초 계획인 120개소의 66% 수준인 80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범사업기간 동안 총 1만 6,435건, 5만 6,420시간의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4d). 시간제 보육의 지역별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을 통해 검색한 결과, 시간제보육 시범실시 기관(2015년 1월 31일 현재)은 총 86개소로 서울시의 경우 3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 9개소, 인천 8개소, 경남 7개소, 경기 5개소, 전북과 전남 3개소, 경북·강원·제주·충남 2개소, 그리고 충북·울산·세종·광주·대구 1개소 등 총 8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뉴스와이어(2014.12.16.). 2014년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성과대회 개최.

IV. 시간제 보육 사업의 분석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기본 취지는 정기적·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제 보육 사업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이용자 관점에서 부모의 필요 뿐 아니라 아동발달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둘째, 부모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선택권 제고에 초점을 두기 위하여 시간제 보육의 형평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기관장⁶⁾ 및 시간제 보육반 교사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1. 부모의 필요와 아동발달의 적합성

시간제 보육 이용자 중 전업주부의 경우는 영아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으며, 시간제 취업모의 경우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워 하였다.

내년에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인데 미리 적응시키기 위해서 시간제 보육을 받게 하고 있어요. 아이가 처음에는 울고 힘들었는데 이제 적응해서 재미있게 잘 다니고 있어요. 그 사이에 제 시간도 잘 활용할 수 있고요

(시간제 보육 이용자 / 전업주부 A)

시간제 보육 이용자들은 하루 3~5시간을 매일 또는 주 2~3회 이용하는 경우, 종일 보육을 주 2~3회 이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기적 보육을 이용하였다. 자녀의 연령 등 여러 이유로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들에게 시간제 보육은 만족도가 높은 보육정책이 되고 있었다. 양육수당을 받고 있지만, 필요할 때 자녀를 돌보아 줄 기관이 있고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제 보육은 시간제 근로자 뿐 아니라 전업주부들에게도 만족도가 높았다. 사실 시간제 보육은 양육자가 영아를 시간제보육 기관에 직접 등하원시켜야 하며, 기저귀와 옷, 우유 등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출퇴근을 해야 하는 근로자에게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특히 시간제 보

6) 시간제 보육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장과 센터장을 총칭하여 '기관장'의 용어를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각각 원장과 센터장으로 구별하고자 함.

육 이용대상이 6~36개월의 영아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집(근로자는 근무지까지 포함하여)에서 부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야 하고, 자동차가 있어야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사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영아의 경우 기관을 이용하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가정 양육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유아의 경우는 부모의 양육 가치관보다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이나 지역 내 기관 회소성, 원하는 기관의 입소 어려움과 같은 이용 기회의 제약 때문이다(이정원·정주영·최효미·김진미, 2014).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부모를 면접한 결과 보육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만이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전업주부 A의 경우는 원하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대기자로 접수해 둔 상태에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고 있었다. 원하는 기관에 아이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원하는 기관에서 종일보육 대신 시간제 보육을 활용하고 있으면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질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처럼 대도시 지역, 특히 서울의 경우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자 중 일부는 종일반 어린이집 대기자들로서 희망하는 어린이집의 입소순위를 기다리면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루 종일 이용해도 30,000원정도 이지만 다른 방법(파출부 비용이나 유치원비용 등)보다 저렴하거든요. 내가 이용한 만큼만 내면 되니까 좋아요. 무엇보다 믿을 수 있어서 보내고 있어요.

(시간제 보육 이용자 / 전업주부 B)

이처럼 시간제 보육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간(기본형 주당 40시간 / 맞벌이형 주당 80시간) 이외의 추가시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면 이용자가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제 보육 제도를 활용하여 종일 보육을 매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종일보육을 받는 영아가 적응을 잘 하기 때문에 일시적 이용 아동보다 더 선호되지만, 몇 명의 영아가 정원을 선점함으로써 시간제 보육을 희망하는 다른 여러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부모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시간제 보육을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이용함으로써 양육비 부담이 높아지지만 원하는 기관에서 만족스러운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수의 부모에게 독점됨으로써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들의 이용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시간의 상한선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장들에게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부모의 취업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한 결과 3명의 기관장들 모두 ‘전업주부이건 맞벌이 가정이건 시간제 보육은 단시간 이용보다는 정기적 이용이 더 많이 선호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시간제 보육의 단시간 이용에 대한 어린이집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긴급할 때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간제 보육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시간 보육 이용의 요구가 있으며 적극 수용하고자 합니다. 아이의 적응 문제로 불안해 하는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리면서 잘 돌보는 것이 시간제 보육 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일이지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장 A)

시간제 보육을 희망하는 부모에게 영아의 발달적 특성을 설명해드려요. 낮가림이 심하고 어머니와의 격리를 불안해 하는 12개월 전후의 영아는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힘들 수 있다고 설명하면 어머니가 단시간 보육 신청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사실 긴급한 상황에서 시간제 보육을 신청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상담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장 B)

이처럼 기관장의 보육철학에 따라서 시간제 보육의 단시간 이용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시간제 보육이지만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영아가 교사와 친숙해지면서 점차 어머니와의 격리가 수월해지고 점차 어린이집에 적응하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영아가 처음 등원하여 울고 불안해 하면 어린이집에 적응하며 잘 놀던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염려한다. 단시간 보육을 받는 영아는 하루를 힘들게 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제 보육반의 다른 영아들 적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어린이집은 3월에 아이들이 입학하여 2~3주일만 지나면 안정적이 되는데 시간제 보육반은 항상 불안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반을 구성하는 아이들이 매일 달라지고, 하루에도 아이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새로 들어온 아이가 심하게 울게 되면 교사 한사람이 붙어서 아이를 달래줘야 하고, 잘 놀던 다른 아이들까지 덩달아 불안해 하고...수시로 반 아이들이 바뀌는 시간제 보육은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기가 어려워요.

(시간제 보육반 교사 A)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 전후의 영아는 낯선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주양육자와의 격리에 불안을 보이는 단계이며 12개월 전후의 영아는 낯선사람에 대한 공포와 격리불안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이다. 18개월 이후가 되어야 영아는 주위의 친숙한 사람들에게 애착을 발달시키기 시작한다. 이러한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시간제 보

육, 특히 단시간 보육은 영아로 하여금 어머니와의 격리에 대한 저항과 낯선상황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처음 경험하는 어린이집 상황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단시간 보육 이용자가 많을수록 시간제 보육반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 시간제 보육반 교사는 단시간 보육을 이용하는 영아의 불안을 먼저 위로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아이들의 요구와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는 것이 쉽지 않다. 시간제 보육반 영아들 역시 같이 함께 생활하는 또래들이 자주 바뀌면서 매번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다양한 양육 선택권과 형평성

시간제 보육의 이용대상은 양육수당 수급자이다.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은 20만원 을 지급하며,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미만 10만원으로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제 보육은 취업 유무에 따른 차등지원으로서 최저 8만원(기본형 40시간 × 2000원)에서 24만원(맞벌이형 80시간 × 3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어린이집을 이용함으로써 지원받는 보육료에 비해 양육수당이 낮은 수준이지만, 시간제 보육 비용의 지원이 양육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복지원이며,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지급될 뿐 아니라 취업에 따른 차등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형평성에 위배되는 지원방식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사실 어린이집 보다는 자녀를 가정 내에서 키우고 싶은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거나 장애아동의 특성으로 가정 내 양육지원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그들이 선호하는 양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 형평성과 평등에 부합한다(송다영, 2009).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시간제 보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된다.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은 국공립 비율이 전체 어린이집의 5.3%에 불과할 뿐 아니라, 국공립 비율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 서울은 10%⁷⁾로 가장 높은 반면 전라북도와 충청도는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역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위주로 설치되어 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인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공보육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지방의 부모들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접근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심지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간제 보육비용의 지원은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된다. 실제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은

7) 2018년까지 20%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2014년 11월 7일 현재 76개소로 서울이 서울 34개소로 가장 많으며, 부산 9개소, 인천 7개소, 경남 6개소, 경기 4개소, 전남 4개소, 전북 3개소, 강원과 제주가 각각 2개소, 광주, 세종, 충북, 충남, 경북은 각 1개소 운영되고 있다⁸⁾. 이처럼 지방보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강남구에는 무려 6개소가 운영되는 등 서울은 시간제 보육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SBS, 2014). 비록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양육수당이 보육비 지원금에 비해 불균형적이지만,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양육수당 수급자 중 공보육 인프라가 갖추어진 대도시 지역의 부모가 접근성이 높은 서비스라는 점에서 농어촌 지역의 양육수당 수급자에게는 접근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점에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고소득층에 대한 특혜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한편 시간제 보육의 도입 취지는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맞벌이형은 취업 등으로 인한 정기적·단시간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며,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형은 병원·외출 등 전업주부의 긴급하고 일시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업주부의 긴급하고 일시적인 수요가 시간제 근로자의 보육수요보다 복지적 혜택이 더 적어야 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설계한 보육정책의 방향은 장기적으로 아동 인지발달에 따라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균형 있게 지원하고,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원하는 부모들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보건복지부, 2014c)이었다. 이러한 취지라면 시간제 보육이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양육수당 수급자 중 위기가 높은 가정의 영유아가 시간제 보육 경험을 통해서 또래와 상호작용하고 교사의 긍정적 관심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용의 차등화에서 소득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

시간제보육만의 안전성 확보 및 질 관리를 위하여 시간제 보육만 아동은 어린이집의 정원으로 합산하여 관리된다. 따라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원아 수 만큼 어린이집 정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기보다는 정규원생

8) 서울 34개소(강남구 6개소, 강동구·구로구·서대문구·도봉구·중구 각 2개소,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종로구 등 1개소), 부산 9개소(연제구, 사상구 2개소, 부산진구, 금정구, 중구, 동구, 기장군 1개소), 인천 7개소(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각 1개소), 경남 6개소(창원시와 김해시 2개소, 진주시와 사천시 1개소), 경기 4개소(양주시, 수원시, 부천시, 김포시), 전남 4개소(목포시, 담양군, 순천시, 무안군), 전북 3개소(전주시, 정읍시, 고창군), 강원과 제주 각각 2개소, 광주, 세종, 충북, 충남, 경북은 각 1개소 운영

을 받는 게 더 이익이라고 보고 있었다.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아이들 숫자만큼 정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도 어린이집 운영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장 C)

사실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가능하다. 여유 공간이 있더라도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려면 서비스 내용에 맞는 환경을 구비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 여부에 따라 시간제 보육 기관신청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한하여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으로 지정하였지만, 지역에 따라 적절한 공적 기관은 없지만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수요가 높을 경우에 대한 대안이 요구된다.

정원을 채우는 어린이집에서는 굳이 시간제 보육을 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정원을 못채우는 어린이집에서는 리모델링 비용과 교사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간제 보육을 고려할 만 하죠.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장 C)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실 리모델링 비용이 지원된다면 시간제 보육 기관 신청을 고려할 의사가 있다는 어린이집의 반응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기관의 운영여건에 의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이 결정되는 것은 공급자 중심의 보육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며, 시간제 보육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필요를 중심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시간제 보육은 영아들의 등원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역할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다. 시간제 보육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시간대는 오전 10시 이후부터 오후 2~3시 사이로, 시간제 보육반 영아가 모두 등원하는 시간대는 점심시간 전후이며, 시간제 보육반 정원이 다 차는 시간대 또는 새로운 영아가 처음 등원한 날에는 시간제 보육반 교사만으로 아이들을 잘 돌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장이나 원감, 심지어 사무원까지 어린이집에서 동원 가능한 일손의 도움을 받는다. 반면 오전 10시 이전 또는 3~4시 넘은 시간에는 항상 정원보다 더 적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원장의 지시에 따라 어린이집의 다른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적을 때는 시간제 보육 2개반을 혼합하여 한 교사가 돌보고 다른 한 교사는 원장이 시키는 일을 할 수 밖에 없어요. 다들 고생하는데 시간제 보육교사만 편

하게 갈 수 없으니...그래야 또 필요할 때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아예 시간제 보육교사를 빼서 다른 반 교실에 투입하는 것은 융통성있는 운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간제 보육반 교사 B)

등하원 시간이 서로 달라서 일일 보육계획이 별 의미가 없어요. 아침에 있는 아이, 오후에 있는 아이가 다르니 그냥 놀이중심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내가 그냥 아이돌보미인가, 교사인가 회의가 들기도 해요.

(시간제 보육반 교사 C)

시간제 보육반 아동의 등하원 시간이 서로 다르며 보육일지 작성의 부담도 적기 때문에, 정규 반 보육교사에 비해 시간제 보육반 교사의 업무가 수월하다는 생각 때문에 시간제 보육반 교사를 기관의 다른 업무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크게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는 셈이다. 교실에서 2~3개 반 이상의 시간제 보육이 이루어질 경우, 시간제 보육반 교사 1인을 아예 어린이집의 다른 업무에 전속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시간제 보육반 교사가 자신의 업무 이외에 어린이집의 다른 업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로서 서로 협력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연령 차이가 있는 아이들을 같이 돌보아야 하며, 반을 구성하는 아이들이 아침 저녁 달라지기 때문에 계획적인 일과 운영보다는 단순한 놀이와 돌봄으로 하루 일과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V. 시간제 보육 서비스 개선 방안

영유아의 가정환경에 맞는 부모의 육아지원서비스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것은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을 줄여 사회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제 보육은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시간제 보육 내용과 운영 현황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보육의 궁극적 수혜자는 영아가 되어야 한다(이영환, 2013)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이용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부모의 편의성은 적극적으로 고려되었으나 영아의 발달적 측면은 고려되지 못한 보육정책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사실 영아의 긴급 돌봄은 기관중심의 돌봄지원보다는 가정양육지원인 아이돌보미 지

원이 영아의 낯선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적절한 육아지원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6~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긴급하고 일시적인 단시간 보육 수요는 영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정양육지원인 아이돌보미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둘째,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이다. 프랑스의 경우 시간제보육(haltes-garderies; 일시보육)의 이용시간 유형을 몇 가지로 정형화(1주일 동안 총 12시간, 만나질 3~5회 등)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시간제 보육의 이용시간이 한정되어 있다.⁹⁾ 그동안 우리나라는 종일보육을 근간으로 하는 보육체계로 인해 보육의 남용이 초래되었으며, 특히 영아 무상보육 전면실시로 가정양육이 가능한 영아들까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경향이 크게 증가하여 보육대란을 불러 왔던 보육정책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시간제 보육에서도 이용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시간제 보육을 매일 종일제 보육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로 이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비록 자부담이라 할지라도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이용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2014년 시범 실시된 시간제 보육 사업은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업으로 양육수당을 받는 시간제 근로자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시간제 보육은 전업주부의 병원·외출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형과 취업 등으로 인한 정기적·단시간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으로 구분된다. 즉 시간제 보육 사업은 ‘긴급하고 일시적인 보육 수요’는 전업주부에게 높을 것이며, ‘정기적 보육 수요’는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에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면접한 시간제 보육 이용자를 보면 시간제 보육의 정기적 이용과 단시간 이용은 전업주부와 시간제 근로자에 따른 차이가 없으며, 전업주부들도 단시간 이용보다는 정기적 이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영신·장영인(2010) 연구에서도 시간제보육 이용자 부모 대부분은 비취업모이었으며, 특히 저소득지역을 제외하고 시간제보육 이용자는 주로 중산층주부로 추정될 만한 사례가 많았으며, 시

9) 최영인·장영인(2010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오사카시 건강복지국의 시간제보육사업의 내용 규정을 보면 시간제보육사업은 “시내에 거주하는 보호자가 질병, 개호, 관혼상제 또는 직업훈련·취학 혹은 육아부담 등으로 인하여 긴급·일시적(2주간 이내) 혹은 계속적으로 (주3일 이내) 보육이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을 보육시설에서 맡아준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간제근무자도 단순저임금 업종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근로자보다는 전업주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 농산어촌이나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 어머니들이 이용하기 수월한 보육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무상보육·교육 실시로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영유아는 최근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분석해 보면 미취업모의 60.5%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경험이 있는 반면, 취업모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경험이 94.3%에 이르고 있다(이정원·정주영·최효미·김진미, 2014). 이러한 통계를 고려한다면 양육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보육은 취업모 뿐 아니라 미취업모의 요구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시간제 보육은 시간제 맞벌이 차등형 지원이 아니라,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이든 전업주부이든, 부모가 자신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양육지원을 선택할 수 있는 부모의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형평성 관점에서 시간제 보육의 비용지원과 서비스 제공 기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시간제 보육 이용자 중 일부이지만, 희망하는 어린이집의 입소 순위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종일보육과 같은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고소득층 양육수당 수급자들에게 정부가 시간제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시간제보육의 비용은 시간단위로 계산되지만 부모의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소득비율비용은 달라진다(장영인·최영신, 2008). 국가보조금은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요보호아동의 수가 많은 지역에 더 선별적으로 지급되고 관리되어야 한다(장경은, 2012)는 주장과 달리 오히려 우리나라 시간제 보육은 서울의 강남구 중심으로 활성화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높은 고소득층 지역의 부모가 시간제 보육 비용 지원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장경은(2012)이 지적하고 있듯이 선택적 보육정책에서 보편적 보육정책으로의 전환은 국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지만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시점에서 현 보육복지정책이 아동들의 복지 향상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낮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은 보육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조건이며, 더 나아가 부모가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시간제 보육의 비용 지원은 보육의 형평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정양육을 하면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고 싶어도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특히 시간제 보육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에 시간제 보육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정부의 지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더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자원과 기회가 균등하게 분배되는 사회적 형평성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때 추구될 수 있다(송다영, 2011; 김현진, 2012).

다섯째,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유형과 제공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정원 등(2014)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영아의 경우는 ‘기관을 이용하기에는 아이가 어려서’이며, 유아의 경우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과 ‘이용 기회의 제약’ 때문이다. 이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함에 있어서 영아는 가정양육 지원 유형인 아이돌보미 사업과 연계하며, 유아는 불규칙적이고 일시적인 돌봄을 지양하고 질 높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시간제 보육을 정기적 보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개발하여 보육의 질을 높인다면 부모로 하여금 기관중심 양육과 가정양육의 선택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용자들의 특성을 구분하여 주 5일 또는 주 3일 반나절 시간제(오전반, 오후반) 프로그램, 주 2~3일 종일 프로그램 등 유형을 다양화하여 가정양육을 하면서 영유아가 적절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시간제 보육을 다양한 유형의 정규보육 모델로 개발한다면 부모는 시간제 보육의 일일 및 주간·월간계획과 연간계획을 고려하여 자녀 양육 계획을 세우고 자녀 발달과 가정환경에 가장 적절한 양육방법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다양화하여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법 이외에 최영신·장영인(2010)이 제안한 것처럼 이용자가 많은 경우는 전담시설도 가능하고, 농촌처럼 계절별 수요가 다른 경우는 프랑스처럼 순회시간제보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되는 시간제 보육은 주로 현재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의 시간제 보육운영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하였듯이 어린이집에서는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시간제 보육 신청을 주저하게 되며, 오히려 정원을 채우지 못한 기관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간 의존도가 높은 보육현실에서 시간제 보육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통해 확대시키기보다는 지역의 대학에서 아동 및 보육관련 학과를 통해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관련 학과는 아동관찰 및 분석을 위한 Lab(실습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영아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평가하는 현장중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의 시설을 활용하여

시간제 보육 전담시설로 운영하도록 지원한다면 시간강사 및 대학원생 등 신진연구 인력의 요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 지원 가능하며, 지역 주민에게도 양질의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민일보(2015. 01. 23). 전업주부 급할 때 아이 맡기는 ‘시간제 보육’ 활성화, 복지부, 보육체계 개편 검토.
- 김정희·이경아·서화숙·최현진(2004). 특수(시간연장형)보육 수요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여성부 발간.
- 김현진(2012). 우리나라 무상보육정책과 사회적 형평성-사회정의론적 관점의 접근. **한국 영유아보육학** 72, 419-445.
- 뉴스와이어(2014. 12. 16.). 2014년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성과대회 개최.
- 베이비뉴스(2015. 1. 28). 3년차 무상보육, 변화의 시기 맞나.
- 보건복지부(2014a). 국민행복을 위한 실천, 2014년 보건복지 정책방향.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4b). ‘국민행복을 위한 실천’ 2014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4. 2. 10).
- 보건복지부(2014c).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아이행복플랜(안) 수립 추진계획 논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4. 9. 18.).
- 보건복지부(2014d). 이용자 94.1%가 시간제 보육이 시간선택제 근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4. 12. 15).
- 보건복지부(2015a).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여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1. 27).
- 서문희(2012. 3. 30). 0~2세 무상보육이 그늘. 한국일보. p. 33-34.
- 서문희·이옥·백화중·박지혜·최진원(2005). 2004년도 보육·교육 실태조사 5: 보육·교육실태 조사 총괄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최정운·최혜선(2007). 영아 양육지원 종합대책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송다영(2009). 가족정책 내 자유선택 쟁점에 관한 고찰. **페미니즘연구**, 9(2), 83-117.
- 송다영(2011). 돌봄 정책의 국가별 상이성과 젠더관점: 아동보육 부문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4(3), 1-33.
- 연합뉴스(2014. 1. 13.). “음식 다 안먹어?” 어린이집 교사 4살배기 폭행.

- 연합뉴스(2014. 1. 17.). 인천 부평구 어린이집서 아동학대 신고. 경찰 수사.
영유아보육법. 법제처 홈페이지 <http://moleg.go.kr>에서 2015년 1월 발췌함.
이영환(2013). 영유아가 꿈과 희망을 누리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보육과제. 2012년 한국
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이정원·정주영·최효미·김진미(2014). 사회통합 관점의 보육 교. 연구보고서
장경은(2012). 한국 아동 복지의 형평성 -보육정책과 저소득층 아동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8, 127-155.
장영인·최영신(2008). 시간제보육의 필요성과 그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영유아보육학**
53, 79-105.
조선비즈(2015. 02. 03). 연 10조 무상보육...어린이집은 머릿수 늘리기 전쟁.
최영신·장영인(2010). 일본 시간제보육의 기능에 대한 일고찰-자녀양육지원 관점을 심으로-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4(1), 59-83.
황옥경(2014). 영아 무상보육 정책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1). 81-100.
KBS(2014. 1. 21.). “울음 안그쳐서...” 영아에 물티슈 물려.
SBS(2014. 8. 26.). 서울시, ‘시간제 보육 시설’ 대폭 확대.
아이사랑보육포털(2015.1.15). <http://www.childcare.go.kr>

·논문접수 4월 29일 / 수정본 접수 6월 1일 / 게재 승인 6월 11일

·교신저자: 이영환,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이메일 yjh3838@jbnu.ac.kr

Abstract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 of Part-time Childcare

Young Hwan Yee

Gratuitous Free Child Care Policy for 0-5 years old has been enforced for three years, The recent incident of child abuse in a child care center however led the government to reorganize overall child care policy including establishment of supporting systems for home child care and activation of part-time child care service.

The part-time child care service should be encouraged in aspect of diversifying parent's options, but this doesn't mean that it secures equality at the same time. Since the part-time child care provides child care expense in a form of voucher and it supports operational costs and personnel expenses of nursing teacher, equality of people who are not able to utilize part-time child care service is not always guaranteed.

In order to establish a policy corresponding with welfare fairness and equality of starting point, government should endeavor to increase subsidies for part-time child care cost based on parent's income rather than their employment status, and finally improve accessibility of home care allowance recipients in low-income group to the part-time child care in an easier way.

Also, the part-time child care service should assure its quality with expanding infrastructures so that parents can use the service whenever they need.

Key words: Part-Time Child Care, Home Care Allowance, Welfare Equality